발전기금 관리 규정

제정 2016. 5. 13.
2차 개정 2022. 04. 2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정 조달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금·유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기부금품이라 함은 본교의 고유목적 사업인 교육, 연구 및 장학 등 대학발전을 위해 무상으로 기부한 현금, 유가증권, 부동산 및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.
2. 발전기금이라 함은 기부금품 중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하는 모금부서 또는 단위기관을 통한 기부금 수입과 그 수입을 통해 조성된 적립금을 말한다.
3. 단위기관이라 함은 본교 직제규정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 모금부서 또는 단위기관의 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에 적용된다.

제4조(기부의 구분) 본교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기부자가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일반발전기금으로 한다.
2. 기부자가 특별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다. 지정기부금의 용도는 연구, 장학, 건축(시설) 목적의 항목으로 구분한다.
3. 지정기부금 외 교육의 목적으로 지정한 기부금은 기타기금으로 한다.

제5조(주관부서) 기부금 모금사업은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에서 주관한다. 다만, 모금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단위기관에서 모금활동이 필요할 경우 대외협력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. (조 명칭변경 2020.10.05.) (개정 2020.10.05., 2022.04.20)

제6조(기부금의 접수와 관리) ① 현금기부금은 대외협력팀에서 접수하여 교비에 편입한다.
② 부동산 기부는 대외협력팀에서 관장하고,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법인에 의뢰한다.
③ 현금과 부동산을 제외한 기부물품은 대외협력팀과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한다.
(조 명칭변경 2020.10.05.) (개정 2020.10.05., 2022.04.20)

제7조(기부금품의 수령 거절)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품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.

1. 본교의 발전목표와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부금
2.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
3. 기부의 대가로 본교에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

(조 명칭변경 2020.10.05.) (개정 2020.10.05.)

제8조(기금집행의 원칙) ① 기금은 기부자의 의사와 본교의 장기 발전에 맞도록 관리한다.
② 발전기금은 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용용도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기획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소관부서에서 집행한다.
③ 지정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획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소관부서에서 집행한다.
④ 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을 집행 후 집행결과를 대외협력처에 통보하여야 한다.
(조 명칭변경 2020.10.05.) (개정 2020.10.05.)

제9조(회계연도)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의 세입·세출 예산에 포함하여 관리하며, 별도 관리할 수 없다.
(조 명칭변경 2020.10.05.) (개정 2020.10.05.)

제10조(위원회 설치) 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,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지대학교 발전기금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(조 명칭변경 2020.10.05.) (개정 2020.10.05.)
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각종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

2. 발전기금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(조 명칭변경 2020.10.05.) (개정 2020.10.05.)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대외협력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② 위원은 대외협력처장, 기획처장은 당연직으로 하며, 내부 구성원, 동문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③ 대외협력팀의 팀장을 간사로 하고 직원을 서기로 위촉한다.
④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임기에 따른다.
(조 명칭변경 2020.10.05.) (개정 2020.10.05., 2022.04.20)

제13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.
(조 신설 2020.10.05.)

제14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기부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예우를 하며,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조 신설 2020.10.05.)

제15조(기부유치자에 대한 포상) ① 본교 발전기금 유치에 직접 관여하여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는 절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② 포상 여부, 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조 신설 2020.10.05.)

제16조(기부금 영수증 발급) 기부자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되, 익명 기부 또는 기부자가 원치 않을 경우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조 신설 2020.10.05.)

제17조(기부자 관리) ① 기부자에 관한 정보는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전산으로 관리한다.
② 기부자의 개인정보는 본교 발전기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하며, 기부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. (조 신설 2020.10.05.)

부칙
이 규정은 201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638, 2020.10.05)
이 규정은 2020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)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